

6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
-편집자 주-

■ '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

- '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“노인장기요양보험”(제5대 사회보험)이 시행됩니다.
-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분은 식사, 간호,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, 정신적,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, 정부지원,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,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,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(4.05%)을 곱한 금액(월 평균 2,700원 내외)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.

※ <http://www.longtermcare.or.kr>, 요양보험제도과(02-2023-8556~69)

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

- 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“노인장기요양보험”이 시행
- 어르신들에게 식사, 간호,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시설이용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.
 - ※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
-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,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(4.05%)을 곱한 금액(월 평균 2,700원내외)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납부하게 됩니다.

<주요내용>

- 신청대상 및 판정절차
 -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
 - 건보공단 직원 방문조사,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 판정
- 장기요양급여의 종류(재가급여,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)
 - 재가급여 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 제공
 - 시설급여 :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
 - 특별현금급여 : 가족요양비
-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·징수
 -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,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('08.7월부터)
- 장기요양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·지자체 부담
 - 수급자 본인부담 : 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
 - ※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,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7.5%, 시설급여 10%
 -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부담
 - 국가와 지자체는 기초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
- 관리운영기구 : 국민건강보험공단
- 법률 시행일 :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제공('08.7.1)
 - 장기요양인정 신청('08.4월 15일부터.)
 - ※ <http://www.longtermcare.or.kr>, 요양보험제도과(02-2023-8556~69)

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'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' 으로 확대

- '08년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급합니다.
-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(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천원)의 연금이 지급됩니다.
 - ※ 대상자 선정기준
 - 노인단독 :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(재산만 있을 경우 9,600만원 이하)
 - 노인부부 : 월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(재산만 있을 경우 15,360만원 이하)
 - ※ 기초노령연금과(02-2023-8372, 8556~69)

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

-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.
 -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%, 이후 3개월 단위로 5%씩, 최고 15% 가산하였으나,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7.1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%, 이후 매월 1%씩, 최고 9% 가산으로 인하여 시행합니다.

<현행 가산금(연체금) 부과 비교>

구 분	기본가산방식		
	단위	가산율	추가 연체(가산)금
국 세 지방세	1개월	1.2%	최초 3%, 매월 1.2%, 최대 60개월
고용보험 산재보험	1개월	1.2%	최초 1.2%, 매월 1.2%, 최대 36개월
국민연금	1개월	1%	최초 3%, 매월 1%, 최고 9%
건강보험	3개월	5%	최초 5%, 3월~6월 10%, 6월이상 최고 15%

■ ■ ■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,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

- '08년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,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환자의 여행,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,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.
- 다만,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, 투약상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(보험약제과 (02-2023-7423)).

■ ■ ■ 실종 아동 · 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

- '08년 9월22일부터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 위해 보호시설에 출입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하였으나, 「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('08.3.21)하여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하였다(아동청소년보호과 (02-2023-8824)).

■ ■ 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· 시행

-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「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으나,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시장 환경 변화 대처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'08. 9. 22.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·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

- 복지부 소속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어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,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 지정·운영하고,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행하게 됩니다.
※ <http://able.mw.go.kr>, 장애인소득보장과(02-2023-8669)